

第256回國會
(定期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8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5年11月4日(金)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6년도 예산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노동부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한강수계관리기금
 - 나.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다. 금강수계관리기금
 - 라.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마. 고용보험기금
 - 바. 근로자복지진흥기금
 -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아. 임금채권보장기금
 - 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3. 雇傭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일반회계편성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

審査된案件

1. 2006년도 예산안(계속) 2
 - 가. 환경부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 가. 한강수계관리기금
 - 나.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다. 금강수계관리기금
 - 라.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3. 雇傭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
- 의사일정추가상정의견 6
5.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일반회계편성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단병호·배일도·강기갑·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김문수·이낙연·이재오·고진화·손봉숙·전재희·안명옥·김재윤·김종인·현애자·박계동·이성권·권영길·유선호 의원 발의) 6
1. 2006년도 예산안(계속) 7
 - 나. 노동부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7
 마. 고용보험기금
 바.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아. 임금채권보장기금
 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이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이정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한 다음 이어서 노동부 소관 법률안 및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예산소위 및 법안소위의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토론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부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한강수계관리기금

나.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다. 금강수계관리기금

라.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1시14분)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0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두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두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정두언입니다.

소위원회가 심사한 환경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과 함께 신상진 위원, 이목희 위원, 제종길 위원, 조정식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11월 3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서 충전소 용자금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간이상수도사업에 30억 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보조율 상향조정 50%에서 70%에 따른 11억 5000만 원, 실내 공기질 관리대책사업에서 사무용품·가정용품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에 대한 연구조사비 2억 5000만 원, 국립공원사업에서 훼손지 복구비 30억 원, 서식지 외 보전기관 4개 기관 확대에 따른 3억 300만 원,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강화사업에서 APN 부담금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5대강 환경지킴이 사업 6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총 137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결과 2006년도 환경부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액보다 127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 대기개선대책 추진사업 중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액을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되,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

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이상 4개의 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재** 정두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열의를 가지고 소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이 증액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필요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이재용** 예.

○**위원장 이경재** ‘예’ 정도가 아니라 바람직했던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이재용**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0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의 우리 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이재용** 존경하는 이경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가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 전체회의 대체토론과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심사 결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충전소 용자사업 1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농어촌간이상수도사업 30억 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11억 5000만 원, 실내 공기질 관리대책 2억 5000만 원, 국립공원사업 30억 원, 서식지 외 보전기관 3억 300만 원,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강화 2000만 원, 5대강 환경지킴이 60억 원 등 모두 7개 사업에 137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정부가 제출한 3조 459억 원보다 127억 2300만 원이 증가한 3조 586억 원으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전체회의 대체토론과 예산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모색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환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원식 위원**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한 가지 현안이 있어서 간략하게만 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우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원식 위원** 예산은 잘 끝났고요.

제가 한 2주 전에 제주도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꽃자왈이라는 게 있는데, 제주도의

숨통 같은 지역이거든요. 제주도를 보면 하천이 흐르지 않고 지하로 다 들어가서 바닷가로 물이 다 나가는데, 그곳은 제주도의 모든 생태를 유지하는, 제주도로 보면 허파 같은 지역입니다.

그게 전체의 19% 정도 되는데, ‘자왈’이라는 말은 자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갈이 작은 돌이 아니고 큰 돌로서, 이게 버려진 땅이어서……

이게 제주도의 허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는데 요즘 그 지역까지 개발이 들어가고,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남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또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환경단체들 문제 제기도 있고 학자들 문제 제기도 있어서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애기뿔소똥구리라고 하는 멸종위기종이 거기에서 아주 굉장히 크게 번식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희귀종이고 멸종위기종인데……

그런 멸종위기종이 있으면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환경부로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환경영향평가서상에 그런 멸종위기종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논란도 좀 있고…… 그런데 제주도의 특수성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이 있지 않고, 검토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환경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길게 봐서 제주도의 곳자왈 지역이 다 무너지면 아마 제주도의 생태계가 다 무너지는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척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긴 한데, 환경부에서도 제주도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관광으로 봐서도 제주도의 환경을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시설, 리조트 잘 짓는다고 관광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환경의 보고로서의 제주도’, 이렇게 가야 제주도의 살길이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곳자왈 지역을 어떻게 보전해 갈 것이냐, 이것을 과제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 이재용**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내일 오후에 제주도에 가서 현장에서 환경단체들과 여러 가지 토론을 통

한 대안 모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녀와서 또 위원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다른 말씀하실 게 없으시면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부 소관인데 아직 인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경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동부 소관의 법안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순서인데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雇傭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위원장 이경재**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정부에서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 우원식 위원입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여 김형주 위원, 장복심 위원, 공성진 위원, 배일도 위원, 단병호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2005년 11월 3일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대체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되도록 정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자영업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어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노동부장관에게 결정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이 없이 위임하는 것은 입법사항의 포괄적 위임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으로 그 결정기준을 열거하도록 한 후 위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제교류·협력, 자격검정사업 및 고용안정기반에 관한 투자는 사업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을 주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법률안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일반회계의 재원부족 및 일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기금의 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이 법에 근거를 마련한 것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 이후 대기업 및 정규직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과 일용직·계약직 등 비정규직, 여성, 향운노조 등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이 긴급하므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참석한 노동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법안심의에 수고하신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우원식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열의를 가지고 소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정부에서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원식 위원** 위원장님!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고용보험법 개정과 관련하여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노동부에 두 가지 촉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4항도 같은 내용이니까 처리하고……

○**우원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너무 조급히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의사일정 제4항 정부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고용보험법을 논의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면서 노동부에 두 가지 촉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심사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좀더 강제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일반회계편성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고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강제력을 준다고 하는데 결의안이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겁니까?

○**우원식 위원** 강제력이라고 하기보다는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규정력이 훨씬 강하게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여하튼 우원식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추가상정의건

(12시02분)

○위원장 이경재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하셨으므로 동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일반회계편성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단병호·배일도·장기갑·노희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김문수·이낙연·이재오·고진화·손봉숙·전재희·안명옥·김재윤·김종인·현애자·박계동·이성권·권영길·유선호 의원 발의)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일반회계편성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 결의안을 제안하신 우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제 11월 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 검토의견과 함께 노동부에 대해 촉구하는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모성보호 관련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면서 산전·후 휴가 급여 사업 소요비용에 일반회계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결의안을 통과시킨 전례를 발견했습니다.

법안소위의 의견이 회의록에 남는 것과 부대결의로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형식과 규정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서 법안소위가 상임위에 제출하고자 했던 내용을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첨부되는 상임위 전체의 부대결의로 하는 것이 법안소위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취지에 더 부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소위가 법안 검토의견과 함께 정리한 의견을 부대결의 형태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목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일반회계편

성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주문은 대한민국 국회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재정의 중심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금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 사업에 관한 국제교류 협력사업과 고용 인프라 확충 사업, 그리고 자격검정 사업에 고용보험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 사업의 소요비용의 일정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특히 고용 관련 인프라는 일반회계로 해야 한다는 당위성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고용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을 매년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일용직과 계약직 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더욱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고 계정 통합 이후 예산이 대기업과 정규직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한국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구조적 전환기에서 절대적인 일자리 부족은 물론 좋은 일자리 부족과 인력수급의 불일치라는 노동시장의 어려움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이외에 고용 인프라 확충이나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용 인프라 확충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상당한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가재정 운용상 그 부담을 일반회계만으로 할 수 없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상당한 부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 제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시행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부담하여야 할 사업조차 모두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고용인프라 확충 등 일반회계에서 담당할 수 있는 사

업에 대해서는 계속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들의 가입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 그리고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통합 이후 예산이 대기업과 정규직에 편중되지 않도록 정부에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안을 드리는 결의안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 결의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임과 동시에 본회의 결의안으로 상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결의안으로 그치는 겁니까?

○우원식 의원 지난번 모성보호법의 경우에 본회의에 회부하면서 함께 갔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에 함께 회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전례도 있고요.

○위원장 이경재 전례가 있지만 하여튼 이것이 일차적으로 노동부에 촉구하는 것이 위원회 결의로 끝나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또 본회의 의결을 별도로 필요로 하는 결의안이라면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우원식 의원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보이고요,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제 의견으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결의안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일반회계편성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 우원식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 결의안으로 하는 겁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순서입니다.

1. 2006년도 예산안(계속)

나. 노동부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마. 고용보험기금

바.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아. 임금채권보장기금

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2시10분)

○위원장 이경재 의사일정 제1항 노동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노동부 소관 2006년도 고용보험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노동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토론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두언 소위원장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노동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두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정두언입니다.

소위원회가 심사한 노동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과 함께 이목희 위원, 제종길 위원, 조정식 위원, 신상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11월 3일, 11월 4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노동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경상이전수입에 일부 누락된 고용안정센터의 임차보증금반환금 3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중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과 중복 편성된 직업안정기관운영과 임차료 인상분 조정액 15억 3900만 원, 노사정위원회운영의 일반수용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예산소요 사항을 반영하였는데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의 운영비 25억 원, 국제교류협력사업 10억 8300만 원, 광주청 이전비에 소요되는 청사관리에 41억 원,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사업에 10억 원 등 총 86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협력사업은 해당의 비목을 변경하여—용역비에서 민간경상이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결과 2006년도 노동부 총 세출예산액은 감액 총액 15억 6100만 원, 증액 총액 86억 8300만 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액보다 71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의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 중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적이 부진한 연장급여 3억 원, 중장년훈련수료 자채용장려금 1억 1300만 원, 유급휴가훈련지원금 12억 3000만 원 등 총 16억 43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용담당인력 전문성 강화 등에 33억 3300만 원, 기능대학 위탁사업비에 1억 9000만 원, 고령자고용관련 인프라 지원에 4600만 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한 고용안정사업운영에 12억 800만 원 등 총 47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훈련비 사업은—Job TV를 말합니다— 전액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직업방송운영체계연구 및 직업훈련 콘텐츠개발·보급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종합직업체험관 사업,—잡월드입니다— 531억 4300만 원에 해당하는 잡월드사업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찬반의견으로 인하여 결정하지 못하였는바 이를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재해보상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의 지출규모 변동 없이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40억 원을 감액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량 확대가 필요한 안전의식제고홍보사업에 40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업이 부진한 공탁

금예산을 축소하여 근로복지공단출연금 5억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제도개선 후 예산에 미반영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의 결과 예산과 기금을 합하여 78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174억 86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97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위원님!

○배일도 위원 의견보다 먼저 전체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아까 소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듯이 4쪽에 종합직업체험관 사업에 대해서 먼저 찬반을 물으시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의견을 물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나 하면 이 사업이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하고 굉장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처음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은, 전부터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2005년 5월의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관련 참고자료를 보면 추진 사유에 청년실업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3D업종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되는 산업구조적인 인력수급의 불일치, 인력수급의 미스매치가 지속해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장관께 물어봤더니 “추진배경, 추진사유에는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이 있지만 추진목적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청년실업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이 잘 가려고 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직업체험을 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하고 있

는 직업체험 50개 사업을 보면 전부 다 그것과 관련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예시해서 보면 우주개발, IT, BT, CT, 무역에서는 해외영업원, 신문에서는 신문기자, 방송은 TV·라디오 PD 등, 공공서비스는 경찰·소방관, 의료복지는 의사·사회복지사, 서비스는 호텔지배인, 예술디자인 쪽은 성악가, 미술가, CG 디자이너, 도예가, 건축가, 의류디자이너, 메카트로닉스 이런 직업들을 종합직업체험관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사업개요에는 있지만 목적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추진해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005년판 노동백서의—저는 장관님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추진배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노동부 답변에 의하면 노동백서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면 노동백서는 우리 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와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업무 실적을 수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요 정책과제를 수록해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추진배경과 설립목적에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노동백서 설립목적에 보면 ‘청년실업의 주요원인인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으로 가져온 잡월드 설립사업 현황에 보면 미스매치 그런 이야기는 썩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실업난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직업을 체험하게 하고 고정된 직업관을 해소하고 이런 목적과 함께 중요한 게 3D 업종의 인력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산업구조적인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 그다음에 청년실업의 주요원인인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목적하고 전혀 다른 사업으로 갔다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심의한 잡월드하고 다른 잡월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땅값 오르는 것은 그대로 다 반영해서 계속 올려 가고 있는데 이 과정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것은 국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아주 자의적으로 고치고 있고 예산도 계속 추가시켜 가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다른 위원님, 신상진 위원님!

○신상진 위원 신상진 위원입니다.

예산소위에서도 논란이 있었습시다마는 제가 볼 때 이 잡월드에 대해 우원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이 작년에 심의할 때……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입니다마는 이게 이미 작년에 2005년도 예산으로 9억 얼마가 책정됐었고 또 국책사업으로서 국회를 통과했던 사업으로서 응모를 받았는데 전국에서 38개 지역에서 응모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해서 결정이 있었고 이번 5월 2일에 확정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국회가 예산을 승인해주었고 이미 올해 몇 억 단위의 예산이 들어간 상태이고요. 그동안 공시지가가 사업결정 후에 인상됐다 이런 지적이 있으신데 공시지가 상승은 다른 사업들에 있어서도 없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차액이 많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는 지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서 일부 지출이 되었고 추진이 되었던 사업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법적인 하자나 절차상 부정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국책사업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예산문제에 대해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그냥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승인했던 사업, 국책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 전액 삭감돼서 중도에 파행을 겪는다면 이것은 좀 낭비도 있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재 신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일도 위원님!

○배일도 위원 작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본 위원은 이 사업의 효과랄지 아니면 이 사업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이 직업체험이라는 것이 당시에 청년실업 해소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해 보려는 정부의 의지를 꺾는 게 아니냐 그래서 반대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이 사업이 확정됐을 겁니다.

그 이후에 부지선정을 놓고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받고 해서 결정되면서 일정한 사업비도 집행됐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규명을 하려면 철

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고 하니까 이것을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문제의 타당성을 이 사업을 추진했던 노동부로부터 들어 보고 그 이후에 이것을 판단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전액 삭감해서 본질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동부측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잡월드 사업을 놓고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업체험관은 현재 우리의 실업문제가 단순하게 유효수요 부족에서 나타난 실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산업구조는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관념이 상당히 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공식 교육기관에서 직업체험의 기회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니라 직업체험관을 건립함으로써 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고 특히 직접 직업체험을 해 봄으로써 해서 변화되는 직업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서 자신이 직업을 선택할 적에……

과거에 우리들이 자랄 적에 무엇이 되려고 하느냐고 물으면 딱 무엇이 되겠다고 한두 가지로 대답을 하는 그런 데서 벗어나야만 실제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진로라든지 또 자기 직업관이라든지 좀더 크게 말하자면 이와 연결된 인생관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직업체험관은 우리 현실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사업 예산을 승인받아서 지난해부터 막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점들 또 걱정해 주신 점들, 특히 오늘 우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담아서, 국책사업인 만큼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경우에 정부로서는 사업 자체를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전년도에 국회에서 계속사업으로 승인해 준 이 사업을 국회가 스스로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요, 만약 사업을 추진하는 노동부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미흡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때로는 수정하고 보충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고의 의미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더 취하든지 하게 하고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은 저희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도 사실은 체면이 깎이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의 계획이나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정부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해서 직업체험관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그리고 이에 따른 기금계획안도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과정을 같이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원식 위원** 이것이 사업목적이 변경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도 국회가 체면이 깎일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런 노동백서도 내고 또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인데 대개 과거에는 정부가 처음에는 큰 사업으로 안 하려고 발 하나만 걸쳐 놓고서 그다음에는 정부에서 하고 싶은 방향으로 막 가고 국회가 들러서 주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서로 다 정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냈을 때의 설립목적, 배경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설립목적, 배경이 같아야 되는데 노동백서에 낸 설립목적과 배경 중에……

저는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청년실업의 주요원인인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것이 발전되고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고 난 이후에 가

저은 노동부의 보고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설립 목적과 배경도 바뀌 가면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국회가 한번 시작했으니까 무조건 해라, 국회가 한번 결정했으니까 바꾸는 것은, 그 다음에 안 주는 것은 국회의 체면에 손상되는 일이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제종길 위원님!

○제종길 위원 방폐장을 만들면 3000억 지원합니다. 며칠 전에 모든 시민이 주민투표를 했고, 여러 도시가 경쟁을 하고요.

사실 방폐장은 짓는 순간 주변 사업지는 땅값이 아마 상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000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에 비해서 잡월드는, 어제 어떤 공무원께서 과학관은 400억인데 1200억 들었다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땅값을 보나 앞으로 물가상승률을 볼 때 적어도 지금 예산의 두 배는 같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 4000억 프로젝트인데 이 4000억 프로젝트는 또 다른 주변의 부가가치, 땅값 상승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높다고 보면 실지로 1조 원의 가치에 버금가는 잡월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불과 2박 3일에 결정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우원식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도 하셨고 또 장관께서 그런 문제를 고쳐가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겠다라고 하는 안을 선보고하고 그리고 후예산을 따 가는 방식으로 하되 금액은 제가 생각 안 해 봤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예산만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배일도 위원!

○배일도 위원 노동부에서 제출한 각각의 문건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국회에 요청했던 시점의 문건과 최근에 자료로 제출한 문건이 차이가 있는데 차이 나는 중요한 내용이 사업 추진의 목적,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원식 위원의 지적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 점들이 우려되어서 제가 작년도에 목소리 높여서 외쳤습니다.

기존에 있는 직업훈련학교나 기능대학 이런 데

이와 같은 기능들을 추가할 수는 없는지, 또 기존에 이 제도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 소위 기업과의 직접 매칭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고민을 해서 비용도 절감되는 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했느냐, 그런 부분들이 되고 나서도 이처럼 잡월드라는 새로운 것이 추진된다면 새로운 사업이니까 그것은 해야 된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그런 것이 보완될 수 있으면 최대한 보완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목적도 달성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당시 정부가 새롭게 추진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국민에게 선전을 했던 사업이어서 국회에서는 그와 같은 정부의 의지를 좀 반영하자 하는 취지로 당시에 예산에 반영해서 통과시켰던 내용입니다.

지금 와서 그런 내용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이 사업을 완전히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느냐, 그러기에는 지금 상당히 추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지적들을 좀 보완해서, 아까 장관께서도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제종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좀 거쳐서 이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여기에서 이것을 다 삭감하자든지 이렇게 의견을 내기는 상당히 신중치 못한 결정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찬성, 반대로 표결하기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인데 좀 신중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여야 간사 그다음에 우원식 위원님, 신상진 위원님, 노동부차관님 이렇게 다섯 분께서 따로 만나셔서 의견을 조정하셔서, 액수가 531억 4300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축소를 하고 조정을 하면 얼마로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액수가 크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감각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예산소위에서 같이 다뤘었기 때문에 몇 가지 짚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우원식 위원님께서 사업의 목적성과

타당성, 프로그램 문제 등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제기를 하였고 또 소위 과정에서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531억 4300만 원 예산이 대부분 부지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 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부지 확정 후에 1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해당 지자체에서 60% 이상의 부지 비용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의 추가 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이 추가 집행이 앞으로 얼마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짐작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현재의 안 그대로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소위에서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집행을 잠정 보류하고 노동부가 적어도 이런 문제와 과정, 더 나아가서 이것이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부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등등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다시 꼼꼼하게 짚고 국회에 보고하고 해당 지자체와 강하게 협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잠정 보류할 수밖에 없겠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를, 잡월드가 갖는 고유한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진행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은 당장 여기에서 해소하기 어렵다는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펼쳐놓고, 그 적정성과 프로그램, 선정 과정, 선정 후 부지매입 문제 등 이것을 다 놓고서 같이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그래서 제가 다섯 분께 일단 정회시간 동안 이것을 어떻게 다룰지 하는 부분을 일임할 테니까 좀 토론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최종적으로 특위를 구성한 것인데 우선 논의를 하시고, 이것이 확정이 돼야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5분 동안 정회를 하고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조정한 것을 특별소위원회 제종길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잡월드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내용이나 프로그램 교체, 부지 변경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재검토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예산의 일부를 깎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예산은 일단 250억으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장관님께서 국회도 체면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하지 않고, 250억이나 통과시키는 것은 체면 때문이 아니라 직업 체험관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지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소위원장께서 5인 특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고드렸는데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우원식 위원 다른 의견은 아니고 본 위원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사업 내용을 정할 때 노동백서에 설립취지와 설립목적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었는데 5월에 갖다 준 자료에는 설립목적은 빠져 있고 취지만 남아 있었고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장관께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설립취지와 목적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D업종의 미스매치, 청년실업의 미스매치 문제는 여기에 포함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다음에 가져온 자료에는 설립취지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시작할 때 분명하게 3D업종의 문제, 그리고 청년실업의 미스매치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중요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50억이라도 동의해 주었지만 노동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사업취지와 설립목적을 변경시켜 가면서 했다면 대단히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주 좌절감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 정부 부처에서 해 오면 정말 변경시키기가 어렵더라 이거예요. 문제 제기를 그렇게 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이 정부부처가 국회를 대하는 태도일 텐데 이렇게 해서는 파트너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당입니다. 여당과 정부가 파트너로 가야 하는데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를 갖는 한 함께 가기 어렵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기관이니까 국회를 속이려고 하지 마라, 국회와 함께 가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사업 하나 하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배일도 위원님도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배일도 위원** 할 말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열린우리당하고 정부하고만 파트너이고……

○**배일도 위원**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노동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동부 소관 2006년도 고용보험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이상 다섯 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특히 조금 전에 특별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종합직업체험관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531억 4300만 원에 대하여는 250억 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과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특별히 이번 예산 결정과 관련해

서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와 관련한 장관의 인사말씀과 함께 다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과 200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기능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심의 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촉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에 대해 촉구한 내용은 이 법을 시행하고 집행해 나갈에 있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점들은 유념하고 특히 직업체험관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단을 내려 주신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하신 내용들은 차질 없이 준비하여 보고드리고 같이 협의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사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 그리고 예산 집행에 최대한 반영해서 더 이상 위원님들의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06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노력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제종길 위원,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신 김영주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이목희 위원님, 장복심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배일도 위원님, 신상진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김 영 주 김 형 주 단 병 호 박 희 태
 배 일 도 신 상 진 우 원 식 이 경 재
 이 목 희 이 인 제 장 복 심 정 두 언
 제 종 길 조 정 식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하 중 범
 전 문 위 원 이 동 근

○정부측 참석자

환 경 부
 장 관 이 재 용
 차 관 박 선 숙
 정책홍보관리본부 이 규 용
 환경 정책 실 장 고 재 영
 자연 보 전 국 장 김 상 일
 대 기 보 전 국 장 김 경 식
 수 질 보 전 국 장 문 정 호
 상 하 수 도 국 장 유 영 창
 자 원 순 환 국 장 윤 중 수
 홍 보 관 리 관 송 재 용
 감 사 관 이 필 재
 국 제 협 력 관 박 영 우
 재 정 기 획 관 박 희 정

노 동 부
 장 관 김 대 환
 차 관 정 병 석
 정책홍보관리본부
 본 부 장 김 성 중
 홍 보 관 리 관 정 현 옥
 재 정 기 획 관 조 재 정
 고 용 정 책 본 부
 본 부 장 노 민 기
 고용정책심의관 이 채 필
 노동보험심의관 장 옥 주
 직업능력개발심의관 이 상 진
 노 사 정 책 국 장 엄 현 택
 근 로 기 준 국 장 박 중 철
 산업안전보건국장 송 영 중
 국 제 협 력 국 장 정 철 균
 감 사 관 나 장 백

○의안 회부

**勞使政委員會의設置및運營등에관한法律 폐지법
 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 정두언·유정복·이인제·엄호
 성·안상수·박재완·이혜훈·이인기·공성
 진·신상진·박순자·이계진·정화원·고경

화·윤건영·이주호·이재웅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産業安全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5. 11. 2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 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自動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
 표발의)

(2005. 10. 21 이명규·김재원·박재완·심재
 철·권경석·곽성문·안상수·김성조·정갑
 윤·이상득·임인배·배일도·이해봉·이상
 배·고조홍·엄호성 의원 발의)

11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